

제2025-53호 2025년 6월 12일(목)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 화 합 열 린 도 시 인 재 육 성 산 업 도 시 문 화 예 술 복 지 도 시 해 양 관 광 휴 양 도 시 기 후 변 화 선 도 도 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5-280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미평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 여수시 고시	제2025-281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6
○ 여수시 고시	제2025-284호	도로구역 결정·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율촌중학교 앞 도로확장)	8
○ 여수시 고시	제2025-28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12
○ 여수시 고시	제2025-28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13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5-1783호	여수시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사항 공고	14
○ 여수시 공고	제2025-179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	16
○ 여수시 공고	제2025-1798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 주식회사 동림산업	26
○ 여수시 공고	제2025-1800호	도로지정 공고(소라면 사곡리 799번지)	27
○ 여수시 공고	제2025-1808호	도로지정 공고(돌산읍 평사리 1405-136번지)	29
○ 여수시 공고	제2025-1810호	여수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자문회의 개최 결과 공고	31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5 - 280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미평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 도시계획시설(미평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미평공원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2025. 6. 11.

여 수 시 장

1. 여수 도시계획시설(미평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 붙임
2. 여수 도시계획시설(미평공원) 조성계획 결정 도면 : 붙임
3.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공원과(061-659-467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미평공원 조성계획 개요

1. 공원구역 결정조서

시설 번호	시설의 세분	시설의 명칭	부지면적(㎡)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83	문화공원	미평공원	92,516	-	92,516	미평동 400-2 일원	

2. 공원지정 및 결정현황

- 공원지정 년 원 일 : 2012. 07. 13. (여수시 고시 제2012-222호)
- 공원조성계획 결정 : 2015. 04. 22. (여수시 고시 제2015-82호)

3.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부지면적(㎡)		건 축 면 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92,516	92,516	655.81	655.81	655.81	655.81	건폐율 : 7%→7% (변동없음)
시 설 종 류	소 계	37,808.2	39,194.4 (증1,386.2)	655.81	655.81	655.81	655.81	시설율 : 40.87%→42.36%
	도로 및 광장	29,842.3	30,692.9 (증850.6)					실면적 반영
	조 경 시 설	945.8	751.2 (감194.6)					실면적 반영
	휴 양 시 설	-	-					실면적 반영
	운 동 시 설	624.4	719.1 (증94.7)					실면적 반영
	교 양 시 설	3,543.9	3,420.8 (감123.1)					문화예술시설 조성 사업 면 적 반영
	편익 및 관리 시설	2,851.8	3,610.4 (증758.6)	655.81	655.81	655.81	655.81	문화예술시설 조성 사업 면 적 반영
녹지 및 기타		54,707.8	53,321.6 (감1,386.2)					녹지율 : 59.13%→57.64%

나. 도시계획시설(미평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①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증감	
183	미평공원	문화공원	여수시 미평동 400-2번지 일원	92,516	92,516	—	여수시 고시 제2012-222호 (2012. 7. 13.)

②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근린공원 면적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공 원 면 적	92,516	92,516	—	여수시 고시 제2012-222호 (2012. 7. 13.)
시 설 면 적	37,808.2	39,194.4	증)1,386.2	도시공원법 시설을 : 제한없음 문화공원 (적정)
시 설 을	40.87%	42.36%	증)1.49%	
건축면적/연면적	655.81	655.81	—	도시공원법 건폐율 : 20%이하 (적정)
건 폐 율 (건축면적 / 공원면적)	7%	7%	—	

나. 공원조성계획(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83	미평공원	○ 도로 및 광장 29,842.3㎡ ⇒ 30,692.9㎡ (증 850.6) ○ 조경시설 945.8㎡ ⇒ 751.2㎡ (감 194.6) ○ 운동시설 624.4㎡ ⇒ 719.1㎡ (증 94.7) ○ 교양시설 3,543.9㎡ ⇒ 3,420.8㎡ (감 123.1) ○ 편익 및 관리시설 2,851.8㎡ ⇒ 3,610.4㎡ (증 758.6) ○ 녹지 및 기타 － 녹지면적 54,707.8㎡ ⇒ 53,321.6㎡ (감 1,386.2)	○ 구)미평역 문화예술시설 조성으로 인한 녹지공간 축소 및 편익 및 관리 시설 면적 증가 등 현재 미평공원 시설 실면적 반영하고자 미평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다. 공원조성계획 조서

구분	번호	시설내용	시설위치	부지면적(㎡)			규모 (개소)	건축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	-	92,516.0	-	92,516.0	302	655.81	655.81	
시설합계		-	-	37,808.2	증)1,386.2	39,194.4	302	655.81	655.81	42.36%
도로 및 광장	-	도로	공원 전 지역	25,015.3	감)475.5	24,539.8	-	-	-	-
	1-1	진입광장A	미평동 598-9철	1,672.3	증)968.9	2,641.2	-	-	-	-
	1-2	진입광장B	미평동 598-9철	1,902.3	감)126.4	1,775.9	-	-	-	-
	1-3	진입광장C	미평동 400-2철	690.5	감)534.6	155.9	-	-	-	-
	1-4	진입광장D	오림동 511-17철	192.8	-	192.8	-	-	-	-
	1-5	휴게광장A	미평동 602철	40.5	증)873.1	913.6	-	-	-	-
	1-6	휴게광장B	미평동 400-2철	109.8	증)141.6	251.4	-	-	-	-
	1-7	휴게광장C	미평동 400-2철	175.6	감)77.1	98.5	-	-	-	-
	1-8	휴게광장D	오림동 477-4철	43.2	-	43.2	-	-	-	-
	1-9	휴게광장E	미평동 433-4철		증)80.6	80.6				
	소계			29,842.3	증)850.6	30,692.9	-	-	-	-
조경 시설	2-1	연못 및 분수	미평동 380-2철	669.1	감)194.6	474.5	-	-	-	-
	2-2	초화원	오림동 419-2철	276.7	-	276.7	-	-	-	-
	소계			945.8	감)194.6	751.2	-	-	-	-
휴양 시설	3-1	파고라	공원 전 지역	-	-	-	25	-	-	-
	3-2	평의자	공원 전 지역	-	-	-	75	-	-	-
	3-3	등의자	공원 전 지역	-	-	-	66	-	-	-
	3-4	사각의자	진입광장A, B 내	-	-	-	10	-	-	-
	3-5	앉음벽	휴게광장B 내	-	-	-	108	-	-	-
	3-6	야외탁자	철길광장 내	-	-	-	-	-	-	-
	소계			-	-	-	-	-	-	-
운 동 시설	4-1	게이트볼장	미평동 433-4철	360.0	증)94.7	454.7	-	-	-	-
	4-2	체력단련장A	오림동 산15-2철	132.4	-	132.4	-	-	-	-
	4-3	체력단련장B	오림동 419-2철	132.0	-	132.0	-	-	-	-
	4-4	체력단련시설A	체력단련장 내	-	-	-	2	-	-	-
	4-5	체력단련시설B	체력단련장 내	-	-	-	2	-	-	-
	4-6	체력단련시설C	체력단련장 내	-	-	-	2	-	-	-
	4-7	체력단련시설D	체력단련장 내	-	-	-	2	-	-	-
	4-8	체력단련시설E	체력단련장 내	-	-	-	2	-	-	-
	소계			624.4	증)94.7	719.1	-	-	-	-
교양 시설	5-1	다목적공연장	미평동 598-9철	2,510.9	감)4.9	2,506.0	-	-	-	-
	5-2	(가) 철길광장	미평동 602철	1,033.0	감)1,033	-	-	-	-	5-2 →1-5
	소계			3,543.9	감)1,037.9	2,506	-	-	-	-
편익 및 관리 시설	6-1	보행데크A	둔덕동 617-15구	-	-	-	1	-	-	1식
	6-2	보행데크B	둔덕동 565-2철	-	-	-	1	-	-	1식
	6-3	보행데크C	둔덕동 431-2철	-	-	-	1	-	-	1식
	6-4	보행데크D	미평동 632-2철	-	-	-	1	-	-	1식
	6-5	매점	미평동 598-9철	-	증)92.0	92.0	-	-	-	-
	6-6	관리사무실 전시장 휴게음식점	미평동 598철	68.6	증)846.2	914.8	-	655.81	655.81	-
	6-7	주차장A	미평동 400-2철	2,398.1	증)476.6	2,874.7	-	-	-	-
	6-8	주차장B	오림동 산1-2철	226.5	-	226.5	-	-	-	-
	6-9	주차장C	오림동 477-4철	158.6	-	158.6	-	-	-	-
	6-10	화장실	미평동 400-2철		증)258.6	258.6				
	소계			2,851.8	증)1673.4	4,525.2	-	655.81	655.81	-
녹지 및 기타	7-1	녹지	공원 전 지역	54,707.8	감)1,386.2	53,321.6	-	-	-	57.64%
	7-2	교량A(기타시설)	둔덕동 565-2철	-	-	-	1	-	-	1식
	7-3	교량B(기타시설)	둔덕동 636도	-	-	-	1	-	-	1식
	7-4	교량C(기타시설)	미평동 598-9철	-	-	-	0	-	-	폐지
	7-5	교량D(기타시설)	미평동 506-5철	-	-	-	1	-	-	1식
	7-6	지하보도(기타시설)	둔덕동 431-2철	-	-	-	1	-	-	1식
	소계			54,707.8	감)1,386.2	53,321.6	-	-	-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6. 11.

여 수 시 장 (인)

1. 도로명주소(부여·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부여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민원출장소 주소정보팀(☎061-659-3355 ~ 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3.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폐지)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서로 234-14		20250606	건축물 멸실	20101101	화양면지역의 서쪽 도로라는 의미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20-2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서로 234-14	20250611	건축물 신축	20101101	화양면지역의 서쪽 도로라는 의미	

여수시 고시 제2025-284호

도로구역 결정(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 결정(정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여수시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km)
변경 없음	시도	16호선	상봉~여흥	울촌면 조화리	2,631㎡	울촌면 월산리 325-9	울촌면 조화리 227-1	-	0.2

2. 도로구역 결정(정정) 사유 : 토지소유자 정정

3.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총 연장	기 시공	금회 시공						
변경 없음	중로	3	17	12	국지 도로	632	462	201	완충녹지19	중로3-16	일반 도로		-	

4. 사 업 명 : 울촌중학교 앞 도로확장공사

5. 사업기간 : 2023. 12. 8. ~ 2026. 12. 31.(변경없음)

6. 사업내용 : 도로확장 L=0.2km, B=11m(A=2,631㎡)(변경없음)

7.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도로과)

8. 설계도서 등 관계도서의 열람 : 여수시청 도로과(☎061-659-4569, 사업 시행 기간 내)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 : 붙임 참조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1/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울촌면 월산리	325-9	도	46	46	조*리 (기타단체)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월산리 ***~*				변경 없음
2	울촌면 월산리	325-6	도	324	6	건설부	국				변경 없음
3	울촌면 월산리	326-6	도	76	76	여수시	공				변경 없음
4	울촌면 월산리	326-10	도	63	63	건설부	국				변경 없음
5	울촌면 월산리	1363-9	도	92	92	건설부	국				변경 없음
6	울촌면 월산리	326-2	도	30	30	미등기		채*식	돌산면 죽포리	토지대장상 소유주	변경 없음
7	울촌면 월산리	326-9	학	217	217	여수시	공				변경 없음
8	울촌면 월산리	326-5	도	466	376	여수시	공				변경 없음
9	울촌면 조화리	897-1	도	4	4	기획재정부	국				변경 없음
10	울촌면 조화리	444-8	도	106	106	박*례 외1인	순천시 장천동 ***				기정
		444-8	도	106	106×1/2	박*례	순천시 장천동 ***				정정
		444-8	도	106	106×1/2	정*택	순천시 장천동 ***				정정
11	울촌면 조화리	862-22	도	91	91	국토교통부	국				변경 없음
12	울촌면 조화리	862-23	도	9	9	국토교통부	국				변경 없음
13	울촌면 조화리	441-1	도	7	7	여수시	공				변경 없음
14	울촌면 조화리	442-5	도	326	326	정*욱 외 2 인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월산리 ***				기정
		442-5	도	326	326×1/3	여수시	공				정정
		442-5	도	326	326×1/3	정*원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월산리 ***				정정
		442-5	도	326	326×1/3	정*동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월산리 ***				정정
15	울촌면 조화리	136-17	학	413	413	여수시	공				변경 없음
16	울촌면 조화리	136-18	도	91	91	지*한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				변경 없음
17	울촌면 조화리	136-15	도	265	265	여수시	공				변경 없음
18	울촌면 조화리	136-21	대	20	20	김*환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	서*용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 *****	가압류	변경
								울촌수산조 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	가압류	없음
19	울촌면 조화리	136-7	도	33	33	여수시	공				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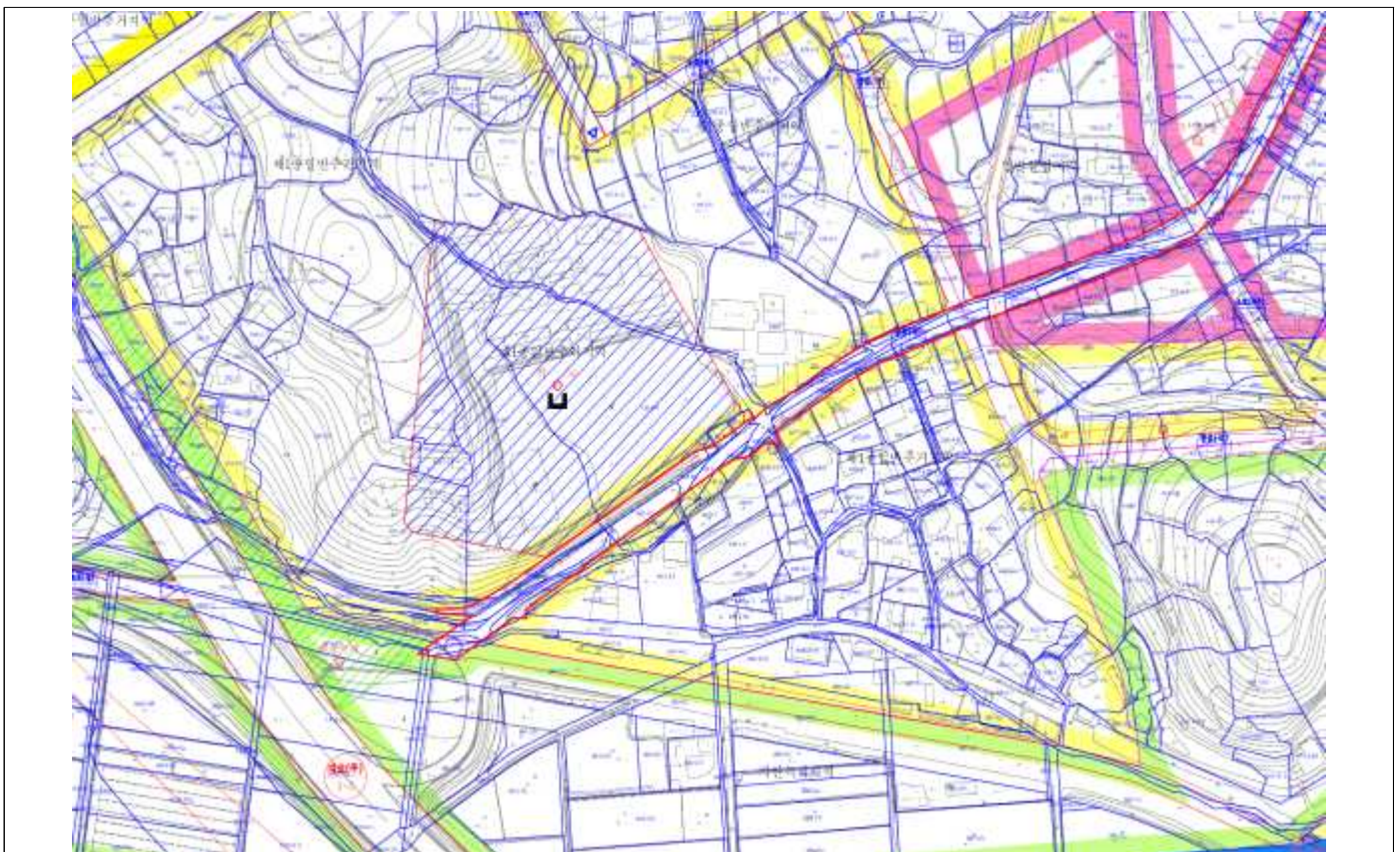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2/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20	울촌면 조화리	136-20	대	39	39	정*훈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				변경 없음
21	울촌면 조화리	136-16	대	18	18	여수시	공				변경 없음
22	울촌면 조화리	439-6	전	1	1	여수시	공				변경 없음
23	울촌면 조화리	136-19	대	24	24	장*윤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				변경 없음
24	울촌면 조화리	438-3	도	13	13	박*신	순천군 순천읍 금곡동 **				변경 없음
25	울촌면 조화리	438-14	대	17	17	여수시	공				변경 없음
26	울촌면 조화리	438-15	도	11	11	이*봉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				변경 없음
27	울촌면 조화리	227-6	도	16	16	김*만 외 2인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				기정
		227-6	도	16	16×1/3	김*만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로 ***				정정
		227-6	도	16	16×1/3	주*채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동산개길 ***				정정
		227-6	도	16	16×1/3	지*업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동산개길 ***				정정
28	울촌면 조화리	862-26	도	130	130	건설부	국				변경 없음
29	울촌면 조화리	227-3	도	202	50	여수시	공				변경 없음
30	울촌면 조화리	137-2	도	23	23	여수시	공				변경 없음
31	울촌면 조화리	227-1	도	195	18	여수시	공				변경 없음
계					2,631						변경 없음

□ 도로구역 위치도



□ 지형도면



여수시 고시 제2025-28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에 대해 고시 합니다.

허가번호 (변경일자)	점용·사용 장소	면적	허가받은 자		목 적	변경사항(기간)	
			주 소	성 명		변경 전	변경 후
2012-044 (2025. 6. 12.)	돌산읍 금봉리 1416-8번지 지선 공유수면	80㎡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64	황순기	굴 하역용 호이스트 설치	2020. 7. 1. ~ 2025. 6. 30.	2025. 7. 1. ~ 2030. 6. 30.

2025. 6. 12.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5-28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에 대해 고시 합니다.

허가번호 (변경일자)	점용·사용 장소	면적	허가받은 자		목 적	변경사항(기간)	
			주 소	성 명		변경 전	변경 후
2012-030 (2025. 6. 12.)	돌산읍 금봉리 1412-27번지 지선 공유수면	142㎡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51	조정덕	생굴 하역용 호이스트 설치	2020. 6. 1. ~ 2025. 5. 31.	2025. 6. 1. ~ 2030. 5. 31.

2025. 6. 12.

여 수 시 장

여수시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사항 공고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주민자치위원 위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여 수 시 장

☐ 위원 인적사항

위촉번호	읍면동	직위	성명	성별	임기
1	대교동	위원	정광조	남	2025.6.12.~2026.12.31.
2	대교동	위원	이춘화	여	2025.6.12.~2026.12.31.
3	대교동	위원	김창현	남	2025.6.12.~2026.12.31.
4	대교동	위원	노경원	여	2025.6.12.~2026.12.31.
5	대교동	위원	정영식	남	2025.6.12.~2026.12.31.
6	대교동	위원	류갑성	남	2025.6.12.~2026.12.31.
7	대교동	위원	마상숙	남	2025.6.12.~2026.12.31.
8	대교동	위원	정건화	남	2025.6.12.~2026.12.31.
9	대교동	위원	김경식	남	2025.6.12.~2026.12.31.
10	대교동	위원	김영옥	여	2025.6.12.~2026.12.31.
11	대교동	위원	김계봉	남	2025.6.12.~2026.12.31.

12	대교동	위원	서윤영	남	2025.6.12.~2026.12.31.
13	대교동	위원	홍희본	남	2025.6.12.~2026.12.31.
14	대교동	위원	박영희	여	2025.6.12.~2026.12.31.
15	대교동	위원	고예영	여	2025.6.12.~2026.12.31.
16	대교동	위원	박남희	여	2025.6.12.~2026.12.31.
17	대교동	위원	이다복	여	2025.6.12.~2026.12.31.
18	대교동	위원	배민우	남	2025.6.12.~2026.12.31.
19	대교동	위원	이명희	여	2025.6.12.~2026.12.31.
20	대교동	위원	강보리	여	2025.6.12.~2026.12.31.
21	대교동	위원	김미심	여	2025.6.12.~2026.12.31.
22	대교동	위원	박수매	여	2025.6.12.~2026.12.31.
23	대교동	위원	문순자	여	2025.6.12.~2026.12.31.
24	대교동	위원	김선덕	여	2025.6.12.~2026.12.31.
25	대교동	위원	한상묵	남	2025.6.12.~2026.12.31.
26	대교동	위원	안행열	남	2025.6.12.~2026.12.31.
27	대교동	위원	제해종	남	2025.6.12.~2026.12.31.
28	대교동	위원	윤정현	남	2025.6.12.~2026.12.31.
29	대교동	위원	김태현	남	2025.6.12.~2026.12.31.
30	대교동	위원	장춘례	여	2025.6.12.~2026.12.3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우리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여 수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2. 대상사업 내역

가. 사 업 명 : 화장동 260번지 외 근린생활시설 토목 및 건축공사

나. 사업주체 : 박종성

다. 시 공 자 : (주)두산리드건설

라. 사업개요

1) 위 치 : 여수시 화장동 260번지

2) 신축 내용 : 사무소 / 지상2층/1동 / 연면적 327.60㎡

3) 공사기간 : 2025. 5. 30. ~ 2025. 9. 30.

4) 순공사비 : 370,000,000원

5) 안전점검 비용 : 3,540,000원(VAT 별도)

바. 건축(변경)허가일 : 2025. 5. 9.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 향타 및 향받기 사용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여수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4-2210호

나. 결정방법

-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별표1]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 계	100점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6. 11. 09:00 ~ 2025. 6. 12.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3]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4) 서약서 1부[서식4]

6. 개찰일시 : 2025. 6. 16.(월) 이전 개별 통보(우선순위 1개 업체만 통보)

* 우선순위 업체(1,2순위)의 점수가 동일 할 경우 2개 업체 통보

7.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개별 통보 받은 업체에 한함.)

가. 제출기간 : 2025. 6. 17.(화) 09:00 ~ 2025. 6. 19.(목) 11:00

나. 제출서류(사실확인 서류)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2)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과 기존건축물 안전
점검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4)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 제출.

※ 사실 확인 서류는 [별첨 1]의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1) 좌측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분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색지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6. 20.(금) 09:00~ 18:00까지

나. 열람방법 : 여주시청 허가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 점 처리합니다.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허가과(☎061-659-41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서식 1부. 끝.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 사업명				
직무분야		건축분야 [] 종합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4. 서약서 1부 [서식4]	수수료 없음
----------------------	---	---------------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자기평가서

1.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 참여 기술인	50	소 계	50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40	소 계	4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점 × 개소		
3. 점검·진단 평가결과	5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5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 A- 이상	5	
		· BBB- 이상	4	
		· BB- 이상	3	
		· B- 이상	2	
		· CCC+ 이하	1	
		· 미제출	0	
총 계	100	평점 : 평가점수 × 10%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2. 수행가격

평 가 항 목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제안가격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70	80	90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65	75	85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60	70	80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55	65	75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50	60	70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45	55	65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40	50	60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35	45	55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30	40	50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25	35	45	
	· 예정가격 11번째 근접	20	30	40	
	· 예정가격 12번째 근접	15	25	35	
	· 예정가격 13번째 이하	10	20	30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 계	100점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가격내용	사 업 명			
	제안가격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4]

서 약 서

□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상호 및 대표자 : 주식회사 동림산업
- 2. 영 업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소라면 조산로 233-15
- 3. 법인 등록번호 : 206211-0008067

업종명	등록번호	주력분야	등록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여수-25-라-06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2025. 6. 11.

2025년 6월 11일

여 수 시 장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799번지 상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5. 6. 11.

여 수 시 장

1. 위 치 :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799번지
2. 도로면적 : 22㎡
3. 도로길이 : 25m
4. 도 로 폭 : 1.5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384	22	
소라면 사곡리	799	대	384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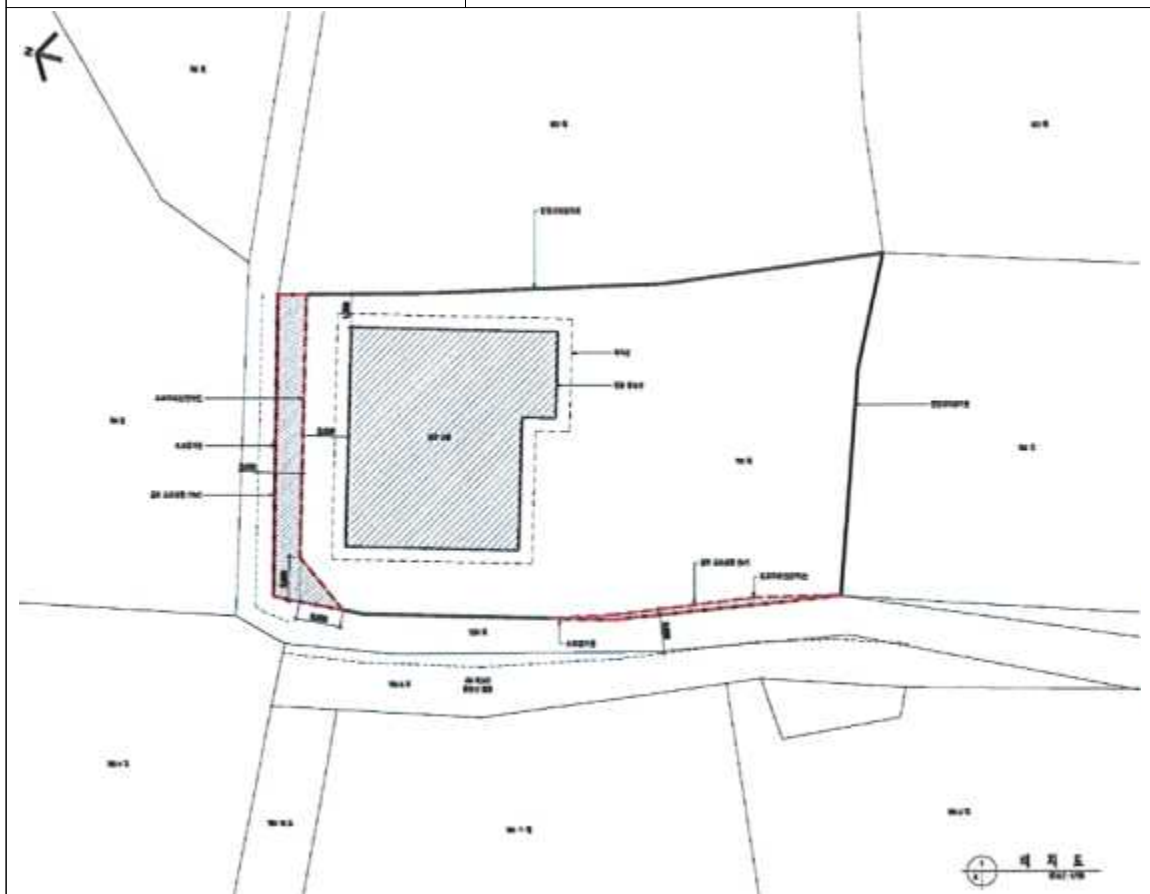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첨]

위 치 도



현 황 도



도로 지정 변경 공고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405-52번지 외 9필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변경 공고합니다.

1. 위 치 : 돌산읍 평사리 1405-136번지
2. 도로면적 : 172m²
3. 도로길이 : 33m
4. 도 로 폭 : 6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돌산읍 평사리	1405-136	도로	339	당초	156	-
				변경	172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2025. 6. 12.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2025-1810호

공 고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2.

여 수 시 장

여수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자문회의 개최 결과

1. 공고기간 : 2025. 6. 12. ~ 6. 26.(14일간)
2. 여수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자문회의
 - 회 의 일 : 2025. 6. 11.(수)
 - 회의내용 : 1.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보고
2. 이순신1 전기사업 허가신청 자문
 - 회의록 : “붙임” 참조
3. 문의사항 : 여수시 신산업에너지과 (☎061-659-2140)

여수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자문회의

회 의 록

□ 회의 개요

- 회 의 명 : 여수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자문회의
- 일 시 : '25. 6. 11.(수) 14:00 ~ 15:30, 회의실(3층)
- 참석인원 : 총 30명 중 22명 참석(73.3%)

□ 회의 결과(주요내용)

I. 공공주도 단지개발 지원사업 보고

○ 녹색에너지연구원 이창민 선임연구원

- '25. 3. ~ 5. 사전컨설팅 결과 설명

○ 위원장(부시장) 최정기

- 지난 2월 첫 회의 이후 몇 달 사이 많은 일 있었으나 가장 큰 변화는 3월 특별법 제정 및 정권 교체일 것임. 타지자체에서 추진해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방식의 한계를 보았고, 우리 시는 변화에 발맞춰 '국가주도 해상풍력사업'의 필요성일 인식하였음
- 지자체에서 지역수용성 확보, 이익공유 등 역할을 담당하고, 국가에서 사업자 입찰, 국내 공급망 확보, 에너지 안보 등 총괄하는 국가주도의 해상풍력 특별법에 적극 참여하기로 함
- 특히,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역민과 수산업의 공존, 황금어장 보호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핵심 과제임. 좋은 의견 내주시기 바람
- 여수는 석유화학산단 조성 이후 50년 만의 대 위기임. 그러나, 영국, 덴마크 등 유럽의 경우도 해상풍력을 통해 조선, 석탄 산업의 위기를 극복한 바 있음. 분명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으며, 타지자체 비해 경쟁력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절묘한 해안을 제시바람

○ 한국풍력문화재단 손충렬

- 1GW 이상 개발을 통한 투자 유치, 주민·어민 충분한 혜택 중요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상풍력 자본 유럽 쏠림, 투자유치 걱정임
- 중국보다는 미텔그룬덴 등 유럽 벤치마킹이 이익공유 측면에서 나을 것임

○ 신산업에너지과장 손용봉

- 이번 벤치마킹은 수산업 공존이 방문 목적임
※ 여수시, '23. 5. 영국 해상풍력 벤치마킹(1차), 해상풍력 단지 내 수산업 공존 사례는 중국이 유일하여 중국 방문 추진 중

○ 위원장(부시장) 최정기

- 10년전 노르웨이 유학을 통해 유럽의 사정을 잘 알고 있음
- 유럽은 오직 에너지 목적이었으나, 우리는 공존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전라남도에서 양식장, 어류, 해조류 다양 특성을 연구 중임. 유럽에도 다양한 연구 사례는 있음
- 여수, 신안 등 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는 어류형 폴대, 해조류 폴대 등 개발해야 하며, 이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않은 방향임
- 중국에 해상풍력단지 내 홍합 등 패류형 기반 시설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 벤치마킹 추진

○ 거문도수협조합장 김상문

- 부시장과 유럽 갔었음. 특별법 이후 긴박하게 돌아가고 이익공유 위해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추진 요망

○ 여수수협조합장 김상문

- 사전 컨설팅은 왜 했는지? 대상지 선정은 언제 하는지?

○ 신산업에너지과장 손용봉

- '25. 3. 25. 제정된 특별법에 대응하는 방향성을 잡기 위해 추진함

- 국가주도 해상풍력사업 추진 관련 정부에 여수국가산단 RE100과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의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팀장 곽원준

- 대상지는 추후에 확정됨. 예전에 보여드린 지도는 기존 사업자가 추진 중인 대상지를 제외한, 신규 개발이 가능한 전체 해역을 보여드린 것이고, 그 중에서 지역수용성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주민·어민 협의를 통해 선정하여 개발할 것임

II. 이순신1 해상풍력 허가신청 안건 자문회의

○ 이순신해상풍력 이상철 전무

- 이순신1 해상풍력사업계획 설명

○ 여수수협조합장 김상문

- 사업자의 반대 주민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 필요
- 바다 없어지면 위탁판매사업 감소로 직원 봉급 뿐 아니라 조합원 출자 배당, 복지사업 어려움 예상됨. 다른 수협도 마찬가지임
- 그런데 이러한 대책은 전혀 언급 없음. 차후 공유수면 협의 때 보상 논의되겠지만, 계획에 수협에 대한 언급 없어서 말씀드림

○ 이순신해상풍력 이상철 전무

- 수협과의 협약 등 원하고 있음
- 소규모 사업이고 주민 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시작할 수 있도록 참작해 주시기 바람

○ 거문도수협조합장 김상문

- 김상문 조합장님 공감. 어족자원 고갈, 어업인 피해, 어촌 노령화, 수익 배분 등 여수시가 컨트롤타워 바람

○ 전남대학교 한경호 교수

- 수협위판수수료 감소 부문 사업자 협약 등 추진 필요

○ 안도 김대준 이장

- 이순신1 형평성 맞게 해야 함

○ 거문도삼치끝낚시어선협회 최종선 이사

- 삼치끝낚시 협회에 설명 없었기 때문에 반대하며, 추후 방문 바람

○ 여수중안연안자망협회장 여인남

- 거문도와 74km 떨어져 있는데, 이런 식이면 사업하겠음?
- 배 어디서 조업하는 지 다 알 수 있음

○ 멸치권현망협회장 주승호

- 이미 많이 찬성인데 반대 입장 궁금함

○ 거문도삼치끝낚시어선협회 최종선 이사

- 고기 잡는 어민은 전남도 누구나 거문도 오고 개도 갈 수 있음
- 의견 수렴 위해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남을 요청한 것이 뭐가 어려움? 다 같이 결정권이 있는 것임

○ 문도풍력 최상린 전무

- 충분히 모두 공감. 거위가 황금알을 낳기 전에 배를 가르면 안 됨. 뭔가 태동해 놓고 진행 과정 속에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람

○ 대두라도 김근평 이장

- 해당 지역 바다에서 직접 조업하고 있음. 다수 찬성하는데 추후 반대도 이순신측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고 의견 모았으면 함

○ 상화도 어촌계장 배중원

- 낭장망 등 조업 등 사유로 반대며 나중에 협의는 안 됨

○ 거문도수협조합장 김상문

- 찬반은 있을 수 밖에 없음

○ 한국풍력문화재단 손충렬

- 대안 제시와 상생 협력으로 조건부 찬성 필요

○ 위원장(부시장) 최정기

- 산업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위원별 의견 제출 바람

의견서 취합 및 회의 종료